

고용유지(유급휴직)지원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22.07.21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



1. 건 명: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
2. 근 거: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사업장명 (대표자명)	사업장관 리번호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사 유	주소
				지원금액	회수금액	회수사유		
1	반석개발 (김○호)	781-03-0 10**-0	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4,053,330원	4,053,330원	감원방지 의무기간 미준수	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	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10번길 이하생략

4. 공고기간: 2022.07.21. ~ 2022.08.04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박경선(Tel. 043-850-403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